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3. 12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1. 사업의 개요 ·····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6

3. 지역개황 ····· 9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13

5.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5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16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17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노선을 포함하는 경주시는 동해안권의 중심거점도시로의 육성을 지역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역사적인 유물과 문화를 보유한 역사도시로서 관광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경주역의 개통 및 역세권 신시가지 건설 등으로 많은 교통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 경주시를 통과하는 기존도로 국도7호선, 국도35호선, 국도4호선은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경주시가지 통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 기본계획조사가 완료된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경주시 현곡면~외동읍 L=29.5km) 중 효현~외동구간 L=25.7km가 시공 중에 있으며, 기존 국도20호선과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 따라서, 본 과업은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현곡면~외동읍 L=29.5km) 중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경북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함으로서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환경영향평가 목적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 국도건설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환경영향평가 및 재협의 실시근거

본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8년 2월 25일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회신을 기 통보(환경평가과-1268)받았으나,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①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표 1.2.1-1>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 분	대상사업 범위	사업규모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6.6km (양방향 4차로)

<표 1.2.1-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①항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초 : 6.0km 금회 : 6.6km (양방향 4차로)
동법시행령 제54조 ①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997. 04 :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조사(국토개발연구원)

○ 2001. 12～2003.12 : 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연구(국토해양부, 국토개발연구원)

○ 2005. 12～2007.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7. 02. 09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07. 07. 13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08. 02. 25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 2012. 11.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추진

○ 2013. 11.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14. 01.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14. 03. : 환경영향평가(본안) 접수(예정)

○ 2014.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예정)

1.4 사업내용

1.4.1 명칭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

1.4.2 과업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 경주시 효현동

1.4.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4 사업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5 사업내용

가. 개통연도 : 2019년

나. 사업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시설규모	○ 도로구분 : 지방지역 주간선도로(국도Ⅰ등급) ○ 소요예산 : 약 1,404억원 ○ 설계속도 : V=80km/h ○ 설계연장 : L=6.60km(신설) ○ 도로폭원 : 신설구간 (B=20.0m (양방향 4차로))
주요설비	○ 교 량 : 7개소 / 1,040m (장대교 2개소/865m, 소교량 5개소/175m) ○ 지하차도 : 1개소 / 55m (본체 35m, 옹벽 20m) ○ 터 널 : 1개소 / 760m ○ 출입시설 : 입체교차 3개소 (상구, 충효, 야척)

<table>
<tr><td rowspan="6">토
공
부</td><td rowspan="2">본
선</td><td>차 로 폭</td><td>중앙분리대</td><td>길 어 깨</td><td>총 폭 원</td></tr>
<tr><td>3.5m</td><td>2.0m</td><td>2.0m</td><td>20.0m</td></tr>
<tr><td colspa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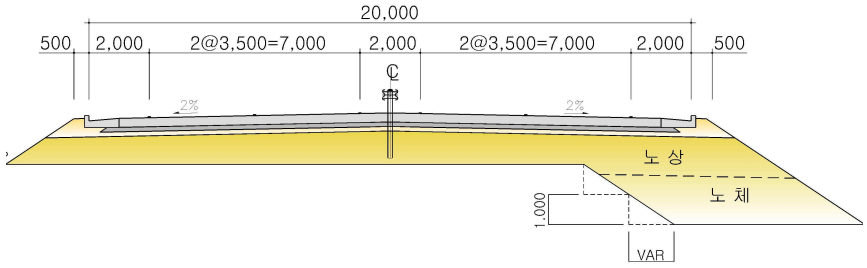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3">연
결
로</td><td rowspan="2">차 로 폭</td><td colspan="2">길 어 깨</td><td rowspan="2">총 폭 원</td><td rowspan="2">연결로 기준</td></tr>
<tr><td>내 측</td><td>외 측</td></tr>
<tr><td>3.5m</td><td>1.5m</td><td>2.0m</td><td>7.0m</td><td>A~B기준</td></tr>
<tr><td colsp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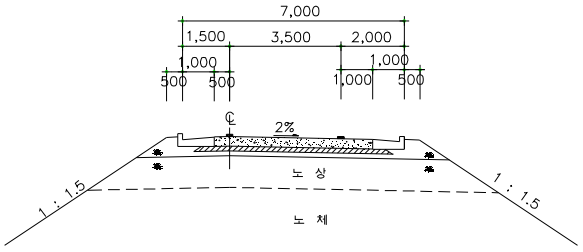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2">교 량 부</td><td>차 로 폭</td><td>중앙분리대</td><td>길 어 깨</td><td>총 폭 원</td></tr>
<tr><td>3.5m</td><td>2.0m</td><td>2.0m</td><td>20.0m</td></tr>
<tr><td colspa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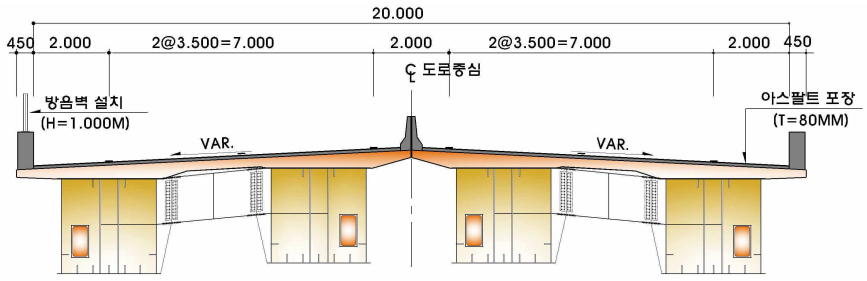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3">터 널 부</td><td rowspan="2">차 로 폭</td><td rowspan="2">중앙분리대</td><td colspan="2">길 어 깨</td><td rowspan="2">총 폭 원</td></tr>
<tr><td>내 측</td><td>외 측</td></tr>
<tr><td>3.5m</td><td>—</td><td>1.0m</td><td>1.0m</td><td>9.98m</td></tr>
<tr><td colspa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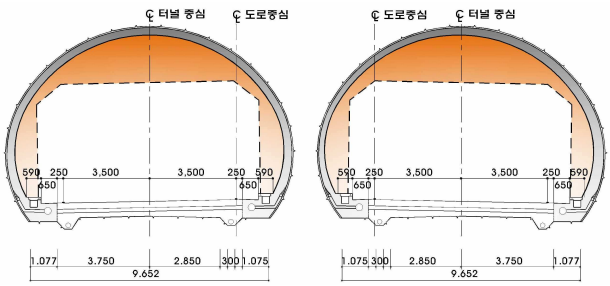
</td></tr>
</table>

(그림 1-1) 횡단구성 및 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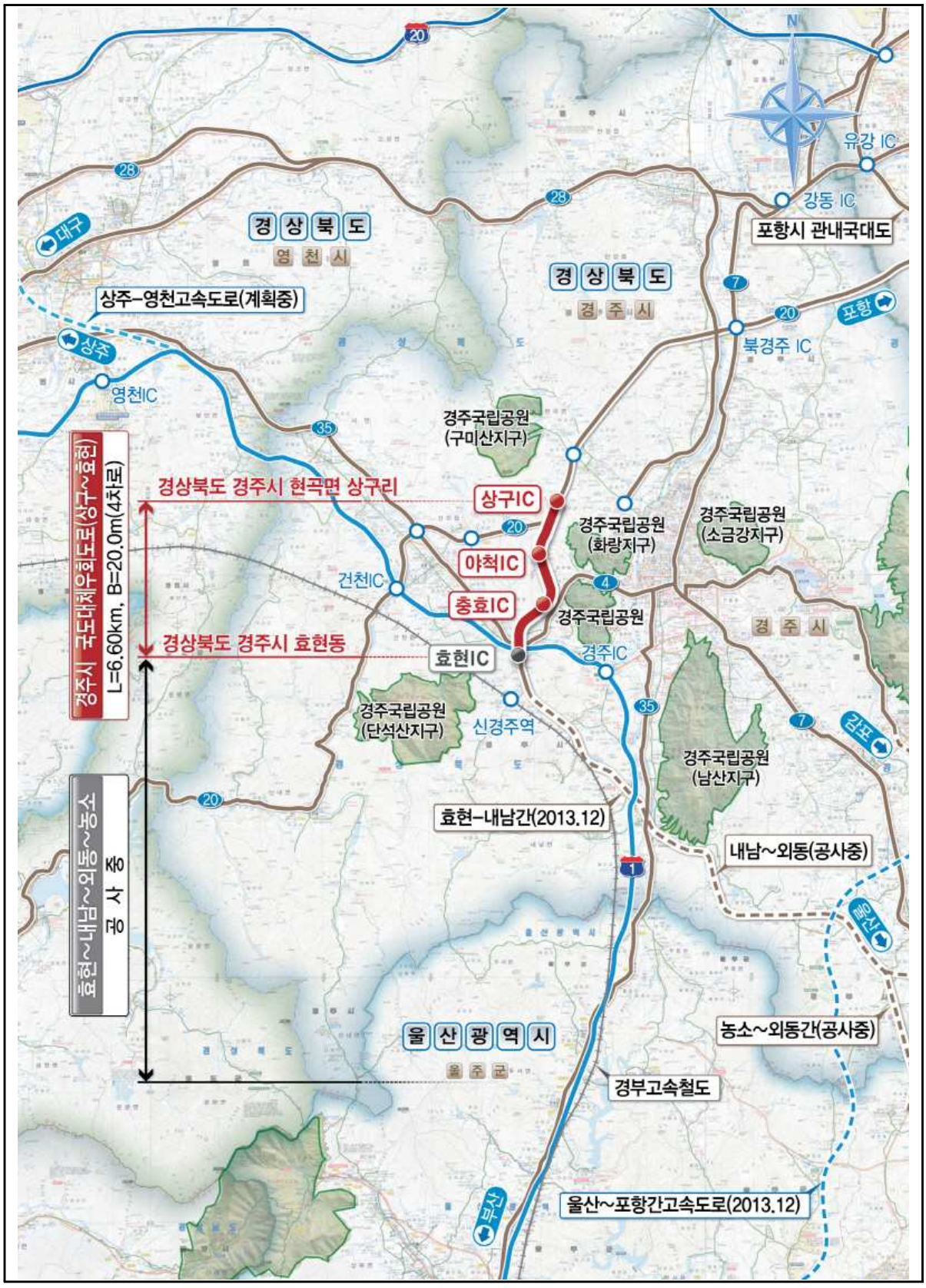

(그림 1-2)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본 계획노선은 2007년 2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회신을 다음과 같이 통보 받았으며, 금회 사업계획시 다음과 같이 반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2007. 02. 09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환경평가과-709)

<표 2-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반영계획

협의의견	반영계획
1. 총괄 ○ 본 협의의견은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부터 경주시 효현동까지 연장 6.0km(폭 20m, 4차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입지적 조건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비교1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협의의견에 따라 비교1안을 계획노선으로 선정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총괄" 및 아래 "항목별 협의의견(사전환경성검토서 및 보완서 포함)"을 도로 기본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시 동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협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별표3] 평가서초안 기재요령 Ⅵ.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반영】협의의견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초안협의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협의하겠음
○ 타법 및 다른 부처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입지제한 사항 등)은 금번 협의와 별도로 검토·반영하여야 함	【반영】타법 및 다른 부처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입지제한 사항 등)은 금번 협의와 별도로 검토·반영하겠음
○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피해 대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피해 대상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겠음

<표 2-1> 계 속

협의의견	반영계획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지형·지질** ○ 본 사업예정지에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의 부존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터널이나 사면 절단 시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 등 효율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질자원 또는 광물 문화재자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선의 변경을 포함한 보존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사전환경성검토시 지형지질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공사시 터널이나 사면 절단시에 지형지질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질자원 또는 광물 문화재자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적정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지역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의 변경을 포함한 보존계획 등을 마련하여 적용하겠음
나. 대기질 / 소음·진동 ○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정온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므로 장래 예측 교통량을 고려하여 대기질 및 소음·진동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환경영향평가시 인접 정온시설에 대하여 장래 예측 교통량을 고려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겠음
다. 수질 ○ 계획노선의 종점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하하는 하천(대천)을 횡단하므로 동 구역을 통과하는 노선구간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반영】 하천(대천) 횡단 구간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음
○ 계획노선 하류에는 탑동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추락, 유류사고 등 발생시 상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전시설 설치, 완충구역 설정 등)	【반영】 차량추락, 유류사고 등 발생시 탑동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반영하겠음(안전시설 설치, 완충구역 설정 등)

<표 2-1> 계 속

협의의견	반영계획
라. 동·식물상 ○ 계획노선 일대에 법적보호종인 황조롱이, 소쩍새가 관찰된 것으로 제시된 바, 이들 서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환경영향평가시 계획노선 일대에 황조롱이, 소쩍새 등의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 노거수는 해당지역의 원식생이나 잠재자연식생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구간 전반에 걸쳐 재확인 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반영】 사전환경성검토시 노거수를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사업구간 전반에 걸쳐 재확인 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마. 문화재 / 경관 ○ 사업계획 노선은 경주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문화재 다량 분포지역이므로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하였으며, 추후 문화재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터널, 교량 등 구조물이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끝.	【반영】 터널, 교량 등 구조물이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제 3 장 지역개황

3.1 입지현황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관련지역·지구 지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계획노선 주변 현황으로는 시가지·조성지, 경작지, 과수원, 산림식생 등이 분포하고, 보호가 필요한 별도관리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입지현황 검토결과

구 분	관 련 법 규	조 사 결 과	비 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사항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해당사항 없음.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법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정맥, 기맥, 지맥 포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3.2 생태 · 자연도

계획노선의 생태자연도 등급별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 본 계획노선 주변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3등급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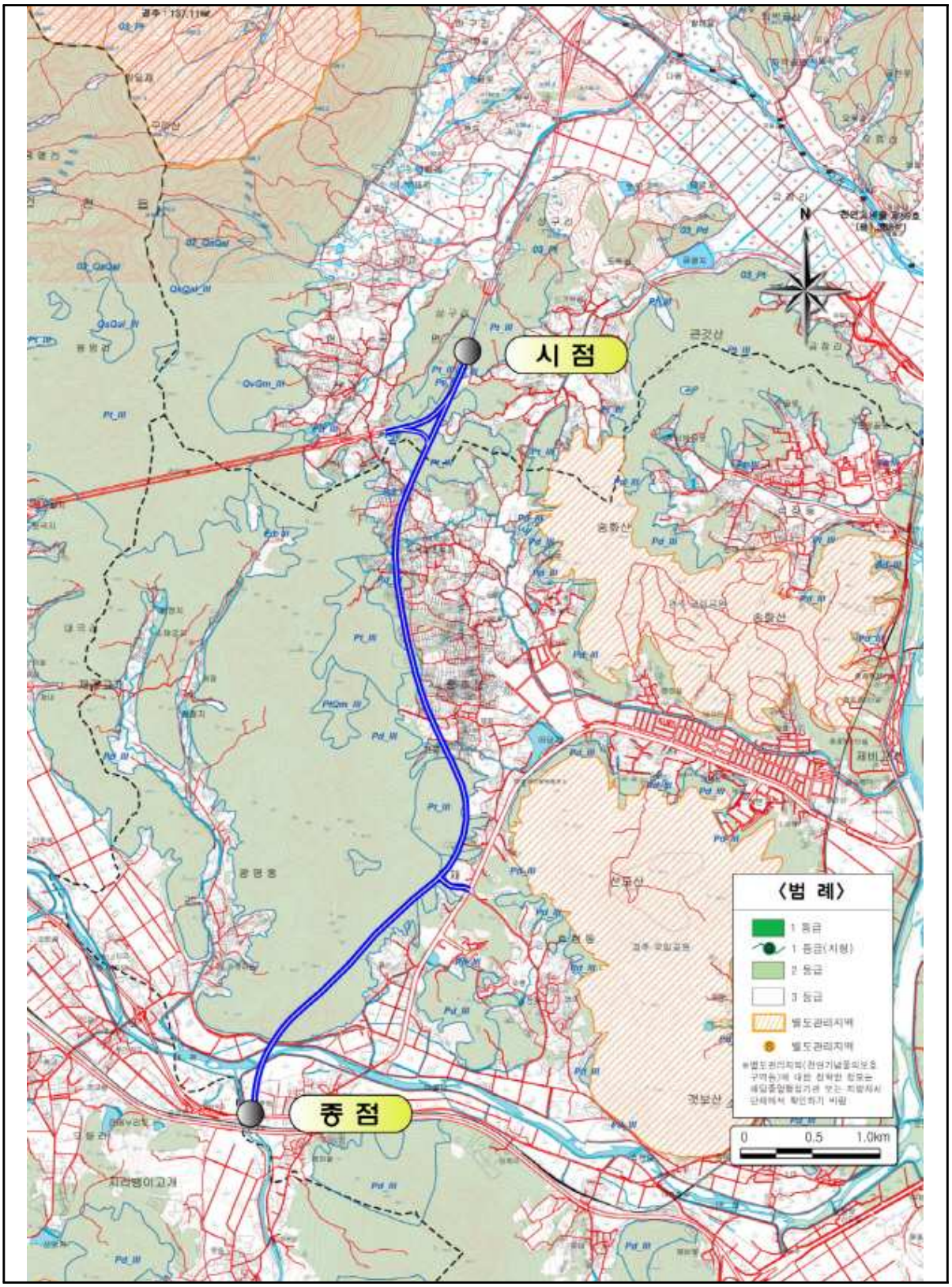

(그림 3-1) 생태자연도

3.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수질오염총량제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계획노선이 위치한 경주시 현곡면 일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본 계획노선은 보전지역(경주국립공원)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인 약 330m 이격되어 통과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이므로,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청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대상 사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 부터의 거리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3.5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3.5.1 취·정수장

경주시에는 탑동, 보문 등 9개소의 취수장과 건천, 탑동 등 8개소의 정수장이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5.2 천연기념물

경주시에는 총 5점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현곡면 오류리의 등나무는 계획노선과 약 7k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3 문화재

경주시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215점, 지방지정문화재 56점, 문화재자료 43점으로 총 316점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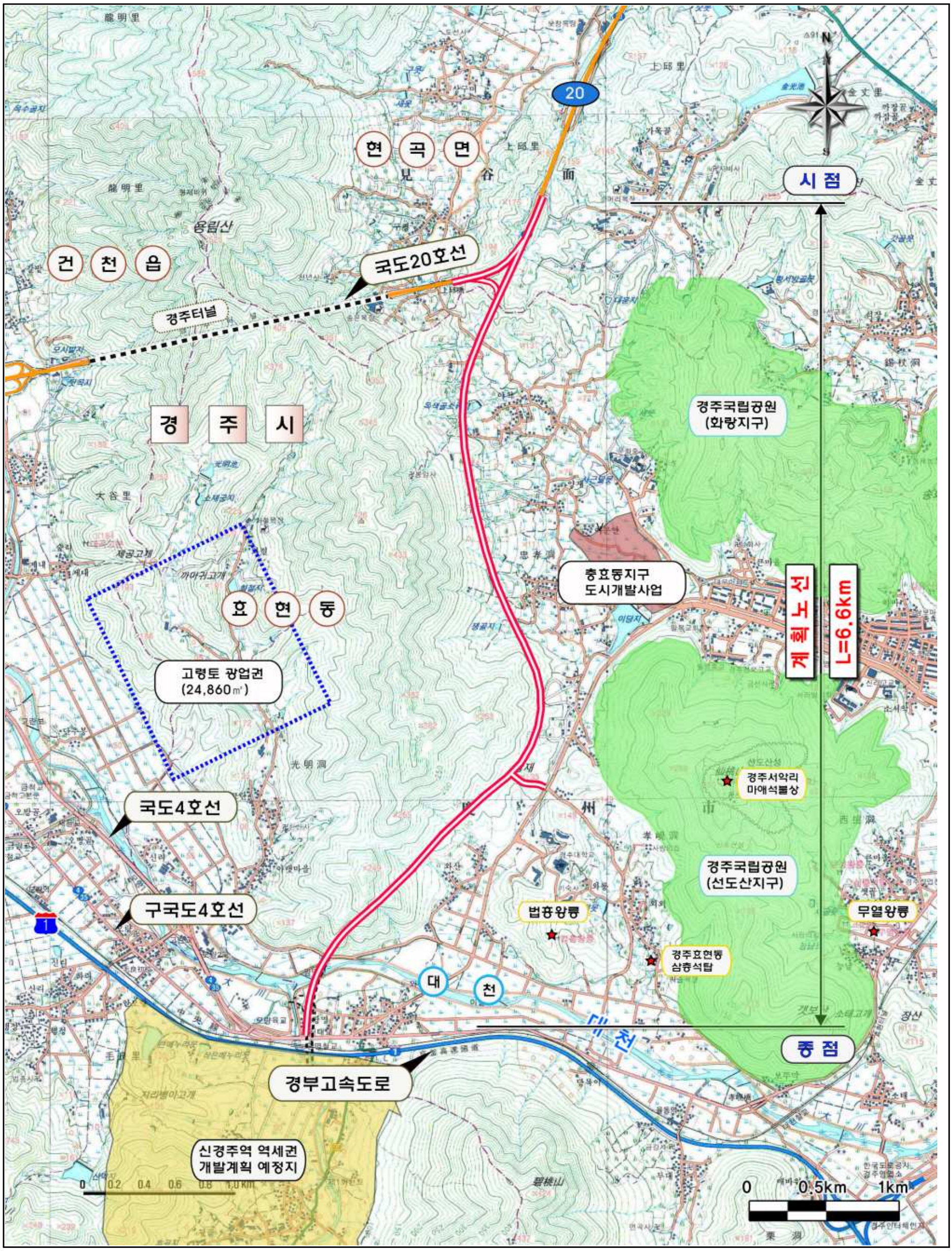

20
현 곡 면
시 점
건 천 읍
국도20호선
경주터널
경 주 시
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
충효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 획 노 선
L=6.6km
효 현 동
고령토 광업권
(24,860㎡)
국도4호선
경주서악리
마애석불상
경주국립공원
(선도산지구)
구국도4호선
법흥왕릉
무열왕릉
경주효현동
삼층석탑
대 천
종 점
경부고속도로
신경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예정지
0 0.5km 1km

(그림 3-1 지역개황도

제4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4-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대기환경	기 상	·포항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개황 조사 및 국지기상 변화 예상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기질(온실가스)	·공사장비 가동 및 토공작업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에 의한 영향 예상지역 ·운영시 차량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영향 예상지역	계획노선 주변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 질(수리수문)	·공사 중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교량 공사시 하천의 수질변화 ·공사시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하천횡단 교량 설치 등으로 인해 수리·수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운영시 발생되는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이 예상되는 수용하천	계획노선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폐유유출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지질 변화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계획노선	계획노선	공사시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육수 동·식물상 등의 변화 예상지역	계획노선 주변 1㎞ 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 예상지역	계획노선 주변 1㎞ 이내	공사시 운영시

<표 4-1> 계 속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의한 폐기물 발생 및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도로이용자에 의한 도로변 갓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계획노선 주변 300m 이내	공사시
		·차량운행에 따른 도로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 지역		운영시
	위락	·사업시행으로 인해 위락시설 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경관	·절·성토 등 지형변화 및 터널·방음벽·교량·교차로 등 구조물 신설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주변지역 주거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산업	·국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산업활동 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본 평가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0개	7개	5개	
대기환경	대기질	○	-	-	-공사시 시설물공사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차량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가동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운영시 차량통행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악취	-	-	○	-건설 및 운영시 악취 유발요인 없음
수환경	수질	○	-	-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변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	-	-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해양환경	-	-	○	-내륙지역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요인 없음
토지환경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토지이용	-	○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토 양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지 및 이동로단절 및 식생훼손 -공사시 장비투입 및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광해 등 영향 발생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생활환경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영향
	위락	○	-	-	-위락시설 및 관광지 분포 변화 예상
	경관	○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요인 없음
	일조장해	-	-	○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요인 없음
	전파장해	-	-	○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요인 없음
사회경제환경	인구	-	○	-	-계획노선 인근의 인구 현황조사
	주거	-	○	-	-계획노선 인근의 주거 현황조사
	산업	-	○	-	-계획노선 인근의 산업 현황조사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평가서 초안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이다.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공람 기간 및 장소,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6.2 평가서 초안 공람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경주시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시 현곡면사무소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 공람장소는 경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공람장소에는 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와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둘 것이다.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

6.3 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거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 단,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경주시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이다.

6.4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에 의거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주시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관련근거

○ 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 지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13.01.01, 환경부)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일시 : 2013년 10월 24일 ~ 11월 25일

○ 방법 : 서면심의

○ 위원 : 9인

○ 심의안건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6. 기타(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7.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위 원 명 단		
		소 속		성 명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장	김시년
위원	행정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이국원
			도로공사2과	안복현
	협의기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은종관
	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이진희
		대구한의대 리조트개발학과	교수	권용일
		경주시	도로과장	김성수
			환경과장	김문호
		경주시 현곡면 상구2리	이장	서기환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 등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작성시 반영토록 할 계획임

<표 7.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김시년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기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설정된 대상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적절하게 설정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계획노선 주변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의견없음	
		□ **기 타** o 본 계획노선의 선행구간인 「효현-내남」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연관성있는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이국원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평가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STA.1+500 ~ STA.3+000 주변의 마을 및 축사가 인접해 위치함에 따라 정확한 소음예측 및 적절한 저감대책이 필요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계획노선 주변의 야척마을, 양재마을, 와산마을 등의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할 것임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의견없음	
		□ **기 타** o 환경영향평가법외 기타 환경법령(대기,수질,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를 할 것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안복현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대기질 항목은 토사운반 차량 등 공사장비 진·출입로 및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하도록 하고, 민감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하여야 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대기질은 최소 3계절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은 갈수기 및 홍수기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지역주민 수렴시 법적인 절차 외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법(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평가 실시가 가능함	
		□ 기 타 o 본 계획노선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구지방 환경청	은종관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 소음·진동, 동·식물상의 영향평가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평가준비서 제시안 : 대기질, 500m 이내, 소음·진동 300m 이내, 동식물상 1㎞ 이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까지, 토사운반시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그 주변을 추가 - 동물 조사의 경우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동물의 행동반경 포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적용(21개 항목)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여야 함. - 평가항목(13개)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지하수 포함),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자연환경자산,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 현황조사항목(4개) : 기상, 인구, 주거, 산업 - 제외항목(4개) :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o 동 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현곡-외동)와 국도20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0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나, 협의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개설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협의 완료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유 제시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은종관	- 노선 연장(당초 6.0km→금회 6.6km) 및 당초 협의노선 변경 사유 제시 - 계획노선 인근의 건설·공용중인 도로 현황 및 향후 개설 계획 등을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검토하여 도로 개설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o 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참고하여 설정하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 대기질은 2계절 이상·계절별 3일 이상 측정, 동·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고, 그 외 항목은 최소 2~3계절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직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과 연계) - 소음·진동 항목은 충격음 또는 최고 소음도(진동)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등가소음도가 아닌 최고소음도(진동)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자연환경자산 항목은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형상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강구 - 온실가스는 관할 지자체의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환경부, '11.1)”을 참고하여 평가 - 수리·수문 항목은 사업지구 및 주변의 하천, 저류지 현황을 정량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 변화 등을 예측·평가 저감방안 강구 - 절·성토구간 발생에 따른 지형훼손 및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o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영향예측은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o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상기 “대상지역 설정” 및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조사지점을 추가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 조사지점과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은종관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o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공람기간 20일 이상)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o 동 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현곡-외동)와 국도20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0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나, 협의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약식평가 절차 진행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기 타** o 당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o "사업유형별 평가서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09.9, 환경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o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확보여부 및 선행 행정사항 이행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o 평가서(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 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진희	**□ 총괄의견** o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하하는 대천횡단 구간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아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수질 - 터널 폐수 처리수의 방류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수질 - 공사시 광면터널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방류하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 후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영향 파악 - 공사시 부유물질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 또는 고효율침사지의 설치 - 운영시 초기우수 이외에도 겨울철 쌓인눈과 제설작업에 쓰인 염화칼슘,도로에서발생 된 분진 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도로에 인접하거가 횡단하는 수로(또는 소하천)차단에 대한 저감방안수립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수질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하하는 대천횡단 구간의 통과교량 건설로 인한 부유물질 영향예측(필요시수질모델링)	
		□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o 의견 없음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대상 아님	
		□ 기 타 o 의견 없음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 고
대구한의대학교	권용일	□ **총괄의견** o 경주시에는 외동읍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천북산단 등 경주 북부권에서는 내년에 개통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본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충분한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업구간 주변의 교통량 및 사업구간의 목표연도 예상교통량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심의의견** 1.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평가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습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충효I.C.에서 종점까지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도로신설에 따른 중복투자 및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평가항목과 평가범위가 대체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습니다. o 평가서 작성 시, 사업시행에 따라 마을이 단절되거나 마을과 농경지간 연결성이 끊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o 교량이 설치되거나 성토로 인한 둑과 방음벽에 의하여 경관영향뿐만 아니라 일조장해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한 항목 중 일조장해를 검토항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사업지 주변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사업노선이 길고 절성토에 따른 경관영향이 우려되는 등 사업시행에 다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약식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 고
경주시	김성수	**□ 총괄의견** o 본 사업노선 대부분이 경작지 및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규모 지형훼손 및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o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은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음진동항목은 대상범위(300m)외 지역에도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물과 와산, 야척, 제동마을 등 직접적인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향 및 면밀한 대책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o 지형·지질분야 - 사업노선의 시점부인 상구IC 설치구간은 임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업시행시 대규모 절성토 및 식생훼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수립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o 현황조사지점 추가 - 사업노선 인근에 위치한 외산마을은 당초 기본설계안보다 노선과의 이격거리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터널접속부와의 연접, 임야부의 대규모 토공작업 등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본 마을 또한 대기 및 소음진동 현황조사항목에 추가하고 이에따른 예측 및 대책수립 또한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사업시행시 민원 및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마을방송, 마을별 설명회 공지)으로 공고 및 공람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임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o 본 사업이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약식평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고
경주시	김문호	□ **총괄의견** o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거지역 및 인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방진막(방진벽)을 설치하고, 공사장비 및 차량의 분산투입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함. o 계획노선은 탑동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수질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함. o 주변 축사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적정 보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함. o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른경주가꾸기, 300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본 사업 시행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고, 녹지공원 및 가로수길 조성 등 이식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o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설정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 선정,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평가항목 및 범위 등 적절하게 설정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함.	
		□ **행정사항** o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부과징수기관(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함. o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함. o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여야함. o 현장사무소 및 숙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시오수관 연결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시오수관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연결 불가시 충분한 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도법 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소속	성 명	제 시 의 견	비고
경주시 현곡면 상구2리	서기환	□ **총괄의견** o 공사시 일어날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원인규명 및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을시 즉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o 공사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과 주거지 등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o 의견없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 o 수질환경, 대기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의견없음	
		□ **약식평가신청가능 여부** o 의견없음	
		□ **기 타** o 공사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